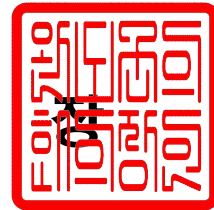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최 정 욱 의원

3. 제정이유

-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완도군 청년상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상가 운영을 통해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규모·면적, 입주 자격 및 입주 계약(안 제3조 ~ 제5조)
- 입주 기간 및 사용료(안 제6조, 제7조)
- 상가 활성화 및 자치위원회 운영(안 제9조, 제10조)

5. 관련법령 : 해당없음

6. 조례안예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16.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4,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청년상가 완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상가 완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상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치위원회”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 간의 자체 모임을 말한다.

제3조(규모·면적) 상가의 규모와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주자격) ①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완도군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인 창업 예정자
2. 완도군에 주소지를 둔 3년 이내의 창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 계약) ① 입주자는 완도군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점포의 위치와 면적

2. 입주 기간

3. 사용료 및 납부 방법

4. 기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는 입주 계약 체결 시, 군수가 정하는 입주계약서 내 입주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입주계약서 내 입주 계약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주 기간) 상가의 입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군수는 상가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가의 월 사용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상가 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가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상가 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경우

3. 상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허가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입주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상가 활성화) ① 군수는 상가시설의 안전대책,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등 관리·운영에 관한 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가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치위원회 운영) 상가의 관리, 상권활성화, 상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완도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완도군 완생 청년상가 규모 및 위치(제3조 관련)

위치	층수	호수	면적(㎡)		비고
			전용	공용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82-68 외 1	1층	101호	26.34	16.22	
		102호	27.56	16.97	
		103호	26.90	16.00	
	2층	공용공간			
		201호	54.45	33.53	
	3층	301호	26.39	16.25	
		302호	54.45	33.53	
	4층	401호	59.92	36.91	